

강한공주 행복한시민

시 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865호 2023. 8. 16.(수)

www.gongju.go.kr



선 람	기관의장	회 람						



발행 : 공주시 편집 : 홍보미디어실 ☎ 041-840-2544
우)352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공 고】

제2023-1854호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제2023-1877호 공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

제2023-1880호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

제2023-1888호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6

제2023-1891호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0

제2023-1900호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46

제2023-1907호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56

제2023-1936호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0

제2023-1966호 공주시 도심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72

【고 시】

제2023-125호 공주 도시관리계획[골드리버CC: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73

제2023-127호 유구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86

제2023-12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87

제2023-12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89

제2023-131호 도로구역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92

제2023-132호 도로명주소 고시 96

공주시 공고 제2023-1854호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폐지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폐지(안 제3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폐지(「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9. 5.(화)까지 공주시장(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경제과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302 FAX : 041-840-2323
- 전자우편 : qjatn444@korea.kr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공주시청 경제과 (☎ 041-840-8302)

제출방법 ▮ 우편 : 우)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319)

↳ FAX : 041-840-2323 이메일 : qjatn444@korea.kr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공주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주시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조(특별회계 설치) ① 공주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u> <u>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u>제3조(특별회계 설치) 공주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u>

공주시 공고 제2023-1877호

「공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3. 8. 16. ~ 2023. 9. 5.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9월 5일까지 공주시장(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교통과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504 FAX : 041-840-2328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제2023-1880호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2022. 10. 31.)인 포상금 지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기준을 추가하고
- 포상금 지급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공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위원회를 일원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기준 추가(안 제2조)

- (기존)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하는 경우
(변경) ①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하는 경우
②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채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채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 ③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채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채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나.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일원화(안 제5조)

-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
 - (명칭) (기존)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변경) 공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 (심의)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공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다.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추가(안 제6조)

- (기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변경)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라. 별지 서식 신설

- (별지 제4호서식)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정비

- 어려운 법령용어 순화 등

3. 입법예고기간 : 2023. 8. 16. ~ 2023. 9. 06.(21일간)

4.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세무과(징수팀)

-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 연락처 : 041-840-8351

- F A X : 041-852-1832 / 전자우편 : ej70524@korea.kr

5. 참고 사항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세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 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그 밖에 참고사항 :

○ 제출처 : 공주시 세무과 징수팀 (☎ 041-840-8351)

○ 제출방법 : 우 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FAX : 041-852-1832 / 전자우편 : ej70524@korea.kr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 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을 “공무원”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18조에 따른” 으로,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 26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2.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과세권자를 제외한 관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제2조제3항 본문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로,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를 “공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로, “한한다” 를 “한정한다” 로 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를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로, “대하여는” 를 “대해서는”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1년이상” 을 “1년 이상” 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도로 · 하천 · 공유수면” 을 “도로, 하천, 공유수면” 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단서 중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를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로, “의한” 을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 을 각각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급심의)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는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공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 본문 중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를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외의 부분 중 “이를 즉시” 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로, “또는 체신관서에” 를 “등에” 로,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를 “방법으로 지급한다” 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허위 기타” 를 “허위 또는 그 밖에” 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0조제3항으로” 를 “「지방

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로,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9조 중 “별지 제2호 서식의” 를 “별지 제2호서식의” 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포 상금 지급대장” 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급대상)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u></p> <p>1. <u>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u></p> <p>2. ~ 3. (생략)</p> <p>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p> <p>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p>	<p>제2조(지급대상) ① ----- ----- <u>대해서</u> <u>는</u> ----- ----- -----.</p> <p>1. ----- ----- <u>공무원</u></p> <p>2. ~ 3. (현행과 같음)</p> <p>4. ----- <u>제18조에 따른</u> ----- <u>따라</u> -----</p> <p>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u></p> <p>1.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u>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u></p> <p>2. <u>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u></p>

현 행	개 정 안
<p>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p> <p>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p> <p>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 -----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 따라 ----- ----- ----- ----- ----- ----- ----- ----- ----. --- 공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 한정한다.</p> <p>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 ----- -- 대해서는 ----- ----- ----- -----.</p>

현행	개정안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u>의한다</u> .	제3조(지급기준) ① ----- ----- <u>따른다</u>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u>1년이상</u>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 ----- <u>1년 이상</u> -----
6. <u>도로·하천·공유수면</u>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u>도로, 하천, 공유수면</u> ----- ----- ----- -----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이하. 다만, <u>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u>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u>의한</u>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 ----- ----- ----- ----- ----- ----- <u>따른</u> -----
8. 제2조제1항4호에 <u>의하여</u>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 <u>따라</u> ----- ----- ----- -----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u>한하여</u> 지급한다.	② ----- ----- ----- <u>한정하여</u> ----- -----.

현행	개정안
<p>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p> <p>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p> <p>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분기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p>	<p>제4조(지급한도) ----- ----- 따른 ----- -----.</p> <p>1. ----- 따른 ----- -----</p> <p>2. <u>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u></p>
<p>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민자치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과장, 기획감사실장, 감사담당관, 회계과장으로 한다.</p> <p>③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p> <p>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징수업무팀장이 된다.</p>	<p>제5조(지급심의)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는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공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한다.</p>

현행	개정안
<p>⑤ <u>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u></p> <p>제6조(지급신청) <u>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u></p> <p>제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포상금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u></p>	<p>제6조(지급신청) <u>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u>-----.</p> <p>-----.</p> <p>제7조(지급방법) ① ----- <u>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u> -----.</p> <p>-----.</p> <p>② <u>제1항에 따른</u> ----- <u>「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u> ----- ----- <u>등에</u> ----- -- <u>방법으로 지급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8조(환수) ① 시장은 <u>허위 기타</u>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p> <p>② 포상금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0조제3항으로 지급하였으나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p> <p>제9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u>별지 제2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u> 및 <u>별지 제3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u>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p>	<p>제8조(환수) ① --- <u>허위 또는 그 밖</u>에 ----- ----- ----- ----- -----.</p> <p>②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 ----- ----- 따라 ----- -----.</p> <p>제9조(대장비치) -----<u>별지 제2호서식의</u>----- ----- <u>별지 제3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u>, <u>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대장</u>-----.</p>

【별지 제1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제6조 관련)

수 신 : 공주시장

참 조 : 세무과장

발 신 : _____ (인)

(단위 : 원)

구 분	건수	금 액			포상금
		합계	본세	납부지연 가산세	
합계					
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	소계				
	<u>1 년 차</u>				
	<u>2 년 차</u>				
	<u>3 년 차</u>				
숨 은 세 원 발 굴	소계				
	미 등 기				
	탈루·은닉 세 원				
	무 단 점 용				
창 의 적 인 제 안 또 는 제 도 개 선	<u>소계</u>				
	세 정 발 전				
	세 입 증 대				

※ (첨부서류)

1. 과년도 체납액(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1부
2.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명자료 1부

【별지 제4호서식】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제6조 관련)

(단위 : 원)

신청자		신청자 확인	징수내역					징수촉탁 수수료			포상금	비고
소속 직급(위)	성명		연도 기분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징수 일자	금액	징수 일자	구분		

【별지 제5호서식】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제9조 관련)

(단위 : 원)

징수자		채납자		징수내역					징수촉탁 수수료			포상금 지급액	징수 확인 (팀장)
직급	성명	주소	성명	연도 기분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징수 일자	금액	징수 일자	구분		

- ※ 1. “구분”란에는 위탁기관명을 표시
- 2. “연도기분, 과세번호, 세목”란에는 위탁기관 과세자료를 표시

공주시 공고 제2023-1888호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요양비 및 진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연장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 12. 31.까지로 명시(「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제3항에 따라 5년 이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9. 5.(화)까지 공주시장(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141 FAX : 041-840-2309
- 전자우편 : blessofsu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및 운용 조례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 041-840-8141)

제출방법 ㄱ 우편 : 우)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319)

ㄴ FAX : 041-840-2309 이메일 : blessofsun@korea.kr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u>2028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공주시 공고 제2023 - 1891호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본 조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주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기존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가 있으나, 협의회 설치 관련 규정 및 위원의 위·해촉 조항 신설 등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국·내외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세부시행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속가능발전 조례 목적, 정의 등(안 제1조, 제2조)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5조)
 - 기본전략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지속가능발전지표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사항

○ 공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7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 위원회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30조)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 협의회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3. 입법 예고기간 : 2023. 8. 16. ~ 2023. 9. 8.(23일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미래전략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미래전략실 정책개발팀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 전화 : 041) 840-2087, FAX: 041-840-2308

5. 참고 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공주시 미래전략실 정책개발팀 (☎ 041-840-2087)

제출방법 ㄱ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32552)

ㄴ FAX : 041-840-2308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공주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4. “공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심의·자문 기구로 행정기구를 말한다.
5.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법,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제28장 및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기업과 시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설립한 지역단위의 민·관 협력기구를 말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3조(기본전략의 수립)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비전과 목표
3. 추진전략과 원칙
4.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④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사회·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총재원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시장은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때에는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제4장 공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2.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3. 시민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해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조사·연구 의뢰)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민관협력단체 또는 시민단체,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
2.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지속가능발전 홍보
4.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
5.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 수렴
6.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7. 국내외 협력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법인·민간단체·시민·공무원

등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제5장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18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지방차원의 지속가능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2명, 감사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시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공동회장으로 하며, 위촉직 공동회장을 대표회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주시 주요사업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이행계획 수립·추진의 협의 및 조정
2.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평가

5. 지속가능발전목표개발 및 평가
6.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7.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20조(협의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회의에 장기 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1조(협의회 운영) ① 대표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이행평가 및 보고
2. 예산 및 결산 보고
3. 공동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④ 임시총회는 대표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회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회 내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2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대표회장은 협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계획의 제출) 협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협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견청취 등) ① 협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사무국) 협회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

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경비 등의 지원) 시장은 협회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회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 계획 및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7조(재원) 협회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시의 보조금
2. 시민의 후원금
3. 협회회 회원의 후원금
4. 그 밖의 후원금

제28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회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로 또는 분기별로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 개시 전에 지급

② 대표회장은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시장에게 협회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 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하여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30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공주시 공고 제2023 - 1900호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2022. 3. 25. 시행)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목적, 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및 고려사항 규정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5조)
 - 기본계획의 수립 공표 및 점검 규정 수록
-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9조)
 - 위원회 구성, 운영, 회의, 자문위원회 등 명시
-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9조)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 및 녹색생활운동 지원 · 교육 ·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제22조)
 -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및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3. 8. 16. ~ 9. 8. [23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환경정책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8522 FAX : 041-840-2329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공주시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 041-840-8522)

제출방법 ㄱ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ㄴ FAX : 041-840-2329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4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기본계획, 충청남도 기본계획과 시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주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탄소중립 관련 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시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역 에너지 전환)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녹색건축물의 확대)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3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온실가스과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교통수단으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수단 및 대중교통수단의 기반시설 확충과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자 및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탄소흡수원 확충)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5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주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7조(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시장은 기후변화로 심화하는 환경오염·훼손에 종합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할 수 있다.

제19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과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공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같은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시설과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의 점검
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통계의 작성·제출
3. 적응대책의 수립·시행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4.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홍보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2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시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주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공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공주시 공고 제2023-1907호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여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 12. 31.까지로 명시(「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제3항에 따라 최장 5년 이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9. 5.(화)까지 공주시장(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환경보호과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513 FAX : 041-840-2329
- 전자우편 : tuonasg@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 041-840-8513)

제출방법 ㄱ 우편 : 우)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319)

ㄴ FAX : 041-840-2329 이메일 : tuonasg@korea.kr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제2항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① (생략)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3년</u> <u>12월 31일까지</u> 로 한다.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① (생략) ② ----- <u>2028년</u> <u>12월 31일</u> -----.

공주시 공고 제2023-1936호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여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 내 사용된 외래어에 우리말을 병기 또는 대체 표기하고,
- 시의회와 먹거리 관련 사업에 대한 업무 공유와 원활한 협조를 통해 공주시 먹거리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주시 로컬푸드 지원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추가하고
- 축산물에 대한 우수농산물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례 내 관련 법률 조항의 오타자와 띄어쓰기 오류를 교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로컬푸드」를 「로컬푸드(먹거리)」우리말 병기(조례제명)
- 「로컬푸드」를 「로컬푸드(먹거리)」우리말 병기(조례전문)
-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변경
- 「로컬푸드 지원 심의위원회」를 「먹거리 지원 심의위원회」로 변경

- 공주시 로컬푸드 지원 심의위원회 시의회 당연직 위원 추가
- 축산물에 대한 우수농산물 정의 신설
- 오탈자 및 띄어쓰기 교정

3. 입법예고 기간 : 2023. 8. 16. ~ 2023. 9. 6(21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유통과(전화: 041-840-3451, FAX: 041-840-3764, E-mail: kbj354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

5. 참고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공주시 농식품유통과 푸드플랜팀 (☎ 041-840-3451)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 농업기술센터 (우편번호 32528)

↳ FAX : 041-840-3764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로컬푸드(먹거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로컬푸드”를 “로컬푸드(먹거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아목을 자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아.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제3조제4호 중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공주시 로컬푸드 지원 심의위원회”를 “공주시 먹거리 지원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 중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로컬푸드 지원”을 “먹거리 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를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농업기술센터”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제2조 제4호”를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역보건법」 제2조제1항”을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학교급식법」 제9조”를 “「학교급식법」 제9조”로 한다.

제6장의 제목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를 “공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치)”를 “(공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제4조에 따른 공주시 로컬푸드 지원 심의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에 따른 공주시 먹거리 지원 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공주시 로컬푸드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공주시 먹거리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4. “공주시 <u>로컬푸드</u>(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 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지역농산물로서 시 지역에서 전시·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p> <p>5.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 사. (생 략)</p> <p><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공주시 로컬푸드(먹거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로컬푸드(먹거리)</u>----- ----- ----- ----- ----- -----.</p> <p>5. ----- ----- ----- ----- -----.</p> <p>가. ~ 사. (현행과 같음)</p> <p>아. 「<u>축산법</u>」, 「<u>축산물 위생관리법</u>」, 「<u>친환경농어</u></p>

아. (생략)

6.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란 시 지역에서 생산한 로컬푸드가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7. (생략)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33조에 따른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 10. (생략)

제2장 공주시 로컬푸드 지원
심의위원회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자. (현행 아목과 같음)

6.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

7.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

-----.

1. ~ 3. (현행과 같음)

4.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5. ~ 10. (현행과 같음)

제2장 공주시 먹거리 지원
심의위원회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및 제33조에 따른 공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주시 로컬푸드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략)
2. 제33조에 따른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 10. (생략)

제6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공공급식업무 부서장과 공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급식업무 과장 및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가 된다.

④ ~ ⑥ (생략)

제19조(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학교급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지원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 먹거리 지원 -----
-----.

제5조(위원회의 기능) -----

-----.

1. (현행과 같음)
2.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3. ~ 10. (현행과 같음)

제6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농업기술센터 -----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

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2. ~ 4. (생략)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7. (생략)

제20조(공공급식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략)

3. 제33조에 따른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한 로컬푸드의 공급 확대

4. ~ 7. (생략)

1. ----- 제2조제4호 -----

2. ~ 4. (현행과 같음)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항-----

6.·7. (현행과 같음)

제20조(공공급식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3.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4.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제21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
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제33
조에 따른 공주시 로컬푸드통합
지원센터를 통하여 공공급식의
식재료를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② · ③ (생 략)

제22조(공공급식 대상기관 등의
노력) ① · ② (생 략)

③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제33조에 따른 공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식재료
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
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
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
속 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학교급식지원센터)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
센터의 기능은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
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포함하여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 먹거리통합지
원센터-----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공급식 대상기관 등의
노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먹거리통
합지원센터-----

-----.

제26조(학교급식지원센터) ① (현
행과 같음)

② -----

----- 먹거리통합지원센
터-----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학교급식의 지원) ①·②
(생략)

③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9
조에 따라 시 지역의 학생 또는
의무교육 대상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33조(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
센터의 설치) (생략)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하는 공주시 공주시
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 ~ ⑥ (생략)

-----.

제27조(학교급식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학교급식법」 제9
조-----

-----.

제6장 공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33조(공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
터의 설치) (현행과 같음)

① -----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

② ~ ⑥ (현행과 같음)

공주시 도심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공주시 도심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1항 규정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안)을 주민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16일

공 주 시 장

1. 공람기간 : 2023. 8. 16. ~ 2023. 9. 5.(15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2.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재생과(☎041-840-8943)
3. 공람대상 : 공주시 관내 빈집소유자 및 주민
4. 공람내용 : 공주시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관련 사항

가. 계획의 개요

나. 빈집정비계획과 근거 법률

다. 빈집실태조사

라. 빈집정비계획 구상

마. 빈집정비계획(안) - 빈집밀집구역 지정 및 활용, 철거계획, 안전조치 및 관리 계획, 리모델링 활용계획(안), 매입활용계획, 기타 빈집의 정비방안, 자원조달계획

5. 의견제출처 : 공주시청 도시재생과(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 본 공람(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주 도시관리계획[골드리버CC: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200번지 일원의 골드리버CC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골드리버CC: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공주시 도시정책과(☎041-840-854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 08. 16.

공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골드리버CC: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1
2. 도시관리계획[골드리버CC: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붙임2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8547)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골드리버CC: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306,462	증)7,027	313,489	100	
관리 지역	소 계	306,462	증)7,027	313,489	100	
	계획관리지역	306,462	증)7,027	313,489	100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200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313,489)	313,489	100%이하	구역변경에 따른 면적 조정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구역의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골드리버CC 지구단위 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200번지 일원	306,462	증) 7,027	313,489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시설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 골프장 : 12홀 •위치 :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200번지와 34필지 •면적 : 306,462㎡ → 313,489㎡ (증)7,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정형화 및 골프장의 효율적인 코스운영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③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

(1)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체육시설	골프장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221-1	175,838	-	175,838	2008.10.20	

(2)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4	4	국지 도로	1678	의당면 청룡리 821	의당면 청룡리 산45	일반 도로	-	2012. 04.02.	체육시설과 중복결정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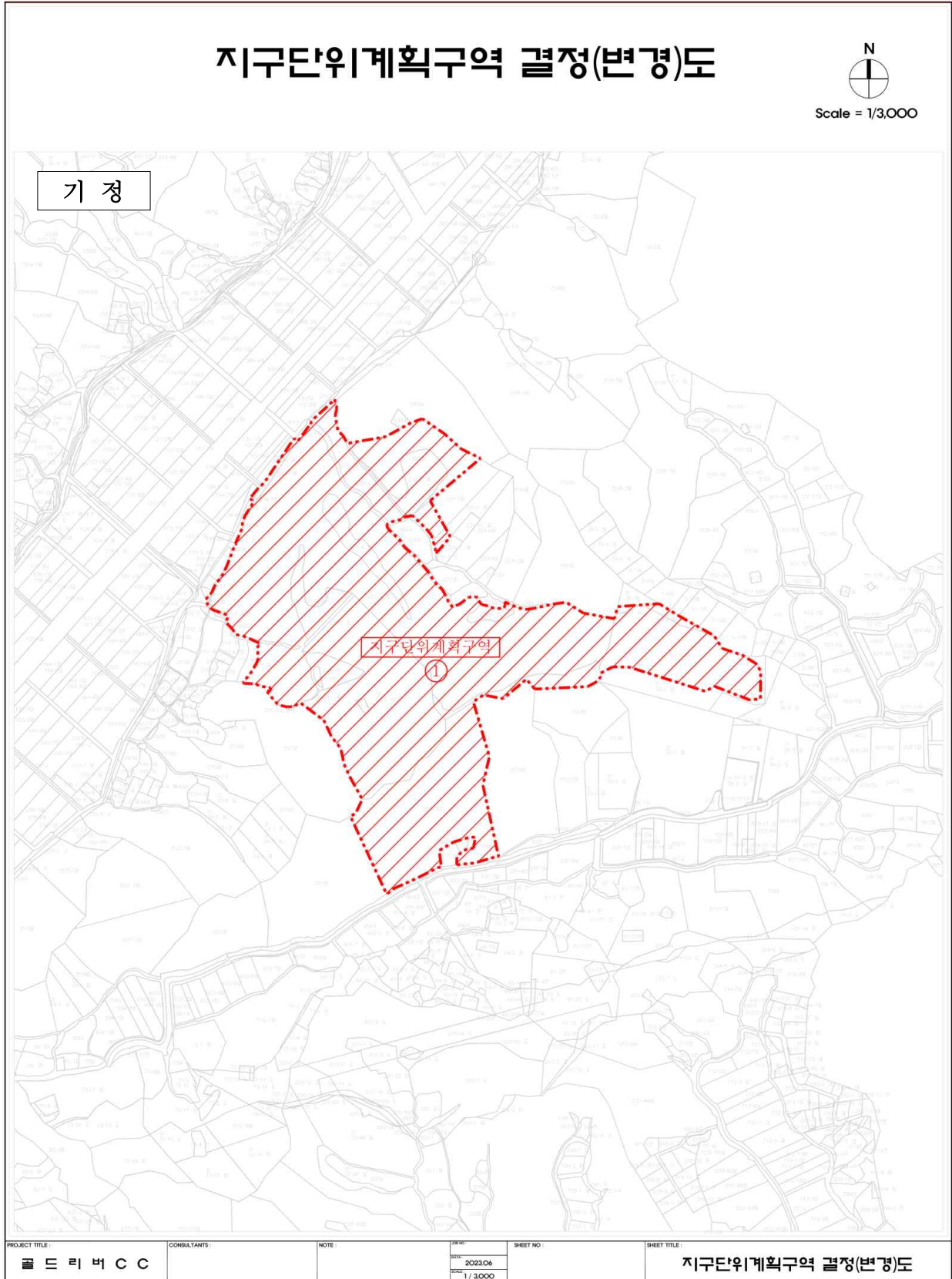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 고						
		기정	변경	번 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합 계		306,462	313,489	-	-	306,462	313,489							
관광 휴양 시설 용지	A	135,633	142,957	골프시설		-	101,138	107,628						
				1	-	골프코스	의당면 청룡리 221-2번지 일원	101,138	107,628					
				건축시설		-	3,814	3,841						
				2	1	클럽하우스	의당면 청룡리 221-2번지 일원	2,022	2,022					
					2	휴게소	의당면 청룡리 221-2번지 일원	92	119	2개소				
					3	관리동	의당면 청룡리 221-2번지 일원	1,103	1,103	2개소				
					4	전기실	의당면 청룡리 221-2번지 일원	55	55					
					5	창고동	의당면 청룡리 221-2번지 일원	542	542	2개소				
					부대시설		-	30,681	31,488					
				3	1	주차장	의당면 청룡리 221-2번지 일원	3,496	4,404					
					2	부지내진입도로	의당면 청룡리 221-2번지 일원	1,412	1,412					
					3	카트도로	의당면 청룡리 221-2번지 일원	14,644	15,250					
					4	관리도로	의당면 청룡리 225-4번지 일원	691	691					
					5	재해용저류지	의당면 청룡리 221-2번지 일원	7,055	5,382					
					6	초기우수저류지	의당면 청룡리 221-2번지 일원	3,383	4,349					
				녹지	B	170,829	170,532	녹지		-	170,829	170,532		
								1	-	조성녹지	의당면 청룡리 221-2번지 일원	126,541	129,580	
								2	-	원형녹지	의당면 청룡리 221-3번지 일원	44,288	40,952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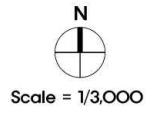
구분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관광휴양시설지	A2-1	의당면 청룡리 221-2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3호, 4호 (단란주점, 안마사술소 제외) 및 13호 운동시설	클럽 하우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4층 이하		
			형태	○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곡선·경사지붕 및 평지붕을 적절히 조합하여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구성		
			색채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다양화하여 주변과의 조화를 유도		
			배치	○ 지형변화 최소화한 합벽계획으로 주변 스카이라인과 맥락을 같이하게 배치		
	건축선	-				
	A2-2	의당면 청룡리 221-2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3호, 4호 (단란주점, 안마사술소 제외) 및 13호 운동시설	휴게소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4층 이하		
			형태	○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곡선·경사지붕 및 평지붕을 적절히 조합하여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구성		
			색채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다양화하여 주변과의 조화를 유도		
			배치	○ 지형변화 최소화한 합벽계획으로 주변 스카이라인과 맥락을 같이하게 배치		
	건축선	-				
	A2-3	의당면 청룡리 221-2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3호, 4호 (단란주점, 안마사술소 제외) 및 13호 운동시설	관리동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4층 이하		
			형태	○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곡선·경사지붕 및 평지붕을 적절히 조합하여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구성		
색채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다양화하여 주변과의 조화를 유도			
배치			○ 지형변화 최소화한 합벽계획으로 주변 스카이라인과 맥락을 같이하게 배치			
건축선	-					

구 분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관광시설 이용지	A2-4	의당면 청룡 리지 221-2번 일원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3호, 4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및 13호 운동시설	전기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 이	○ 4층 이하		
			형 태	○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곡선·경사지붕 및 평지붕을 적절히 조합하여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구성		
			색 채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다양화하여 주변과의 조화를 유도		
			배 치	○ 지형변화 최소화한 합벽계획으로 주변 스카이라인과 맥락을 같이하게 배치		
	건축선	-				
	A2-5	의당면 청룡 리지 221-2번 일원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3호, 4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및 13호 운동시설	창고동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 이	○ 4층 이하		
형 태			○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곡선·경사지붕 및 평지붕을 적절히 조합하여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구성			
색 채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다양화하여 주변과의 조화를 유도			
배 치			○ 지형변화 최소화한 합벽계획으로 주변 스카이라인과 맥락을 같이하게 배치			
건축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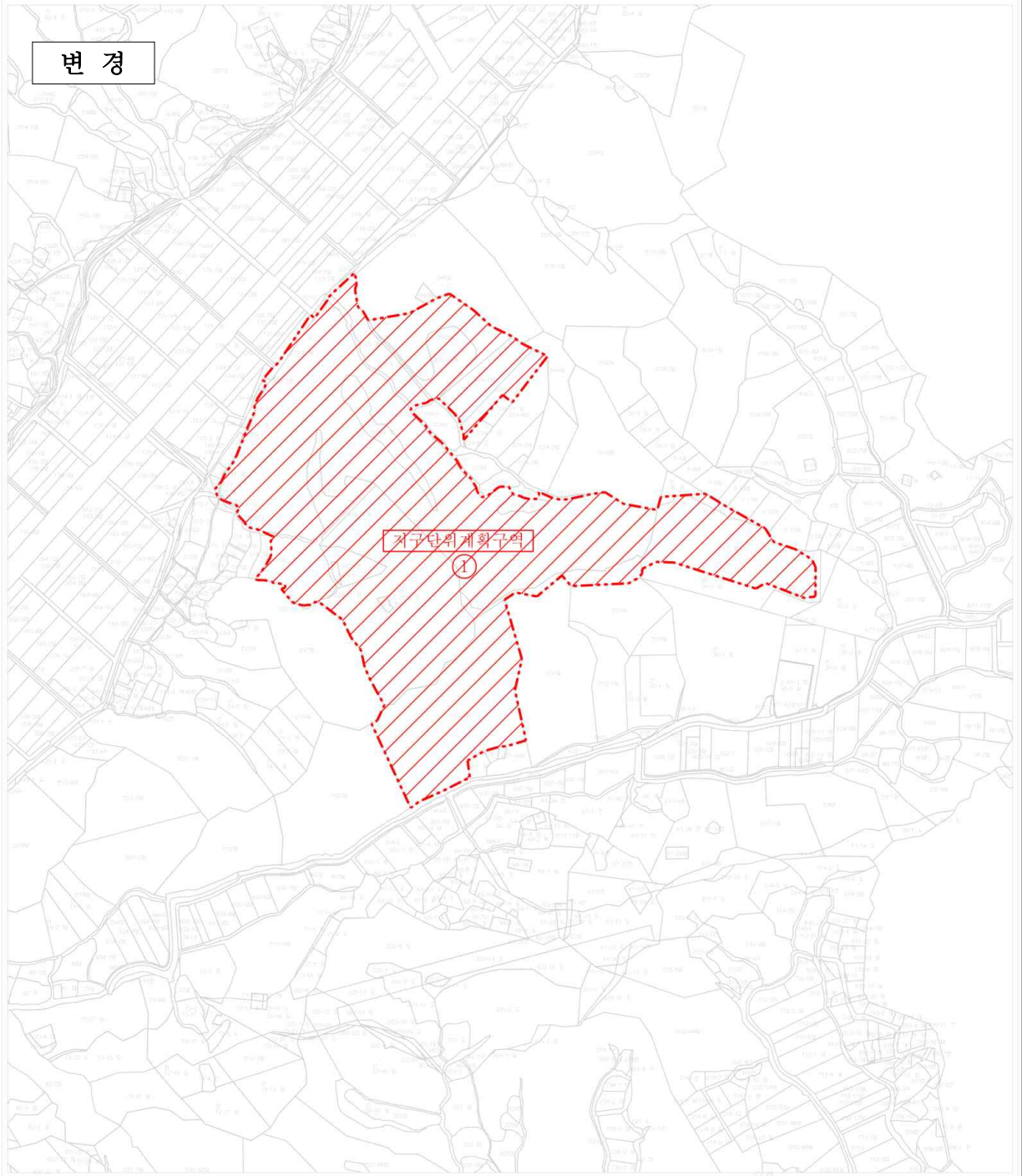
**【붙임2】 도시관리계획[골드리버CC: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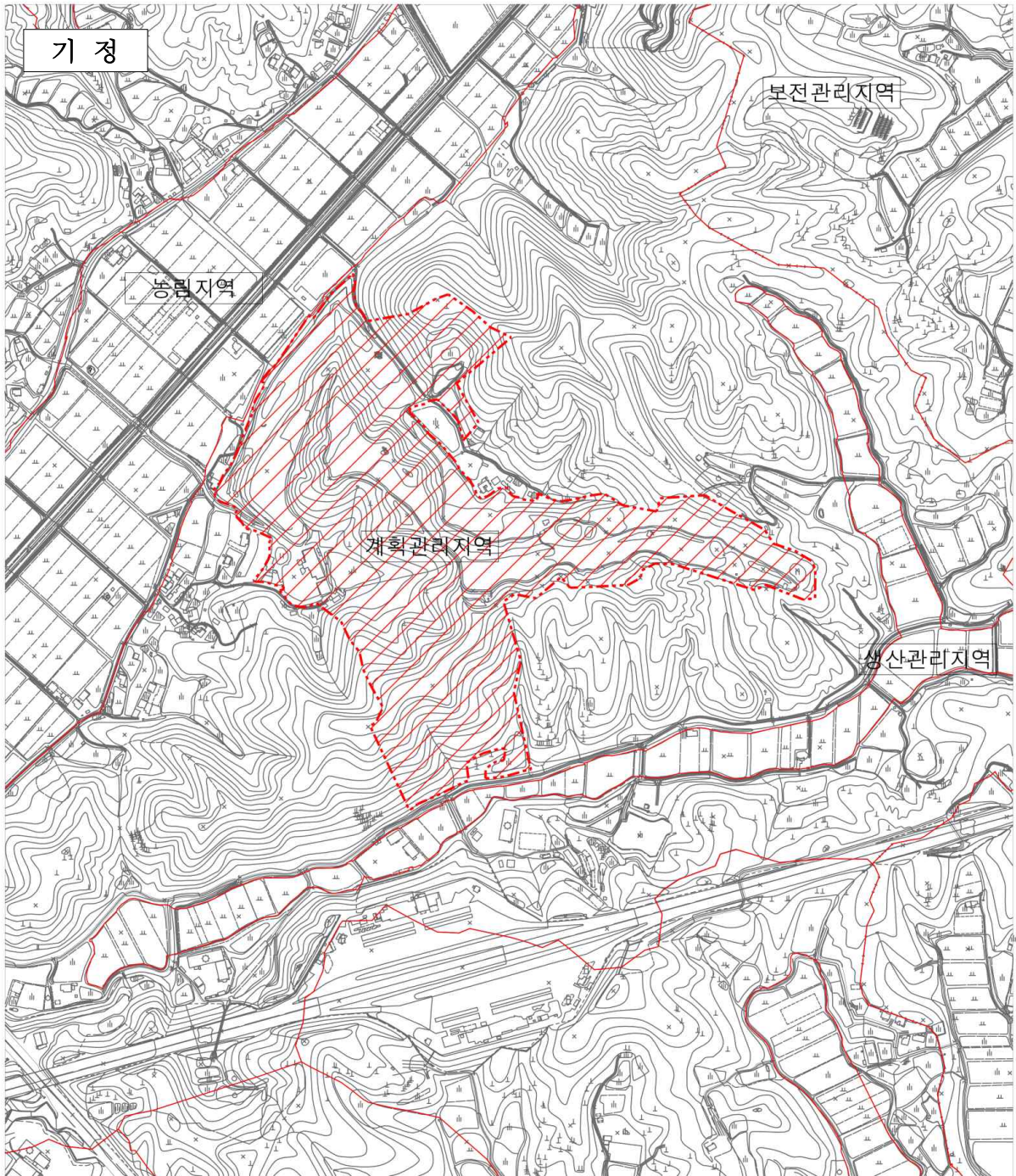


PROJECT TITLE: 골드리버CC	CONSULTANTS:	NOTE:	DATE: 2023.06 SCALE: 1/3000	SHEET NO.:	SHEET TITL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	-------	--------------------------------------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Scale = 1/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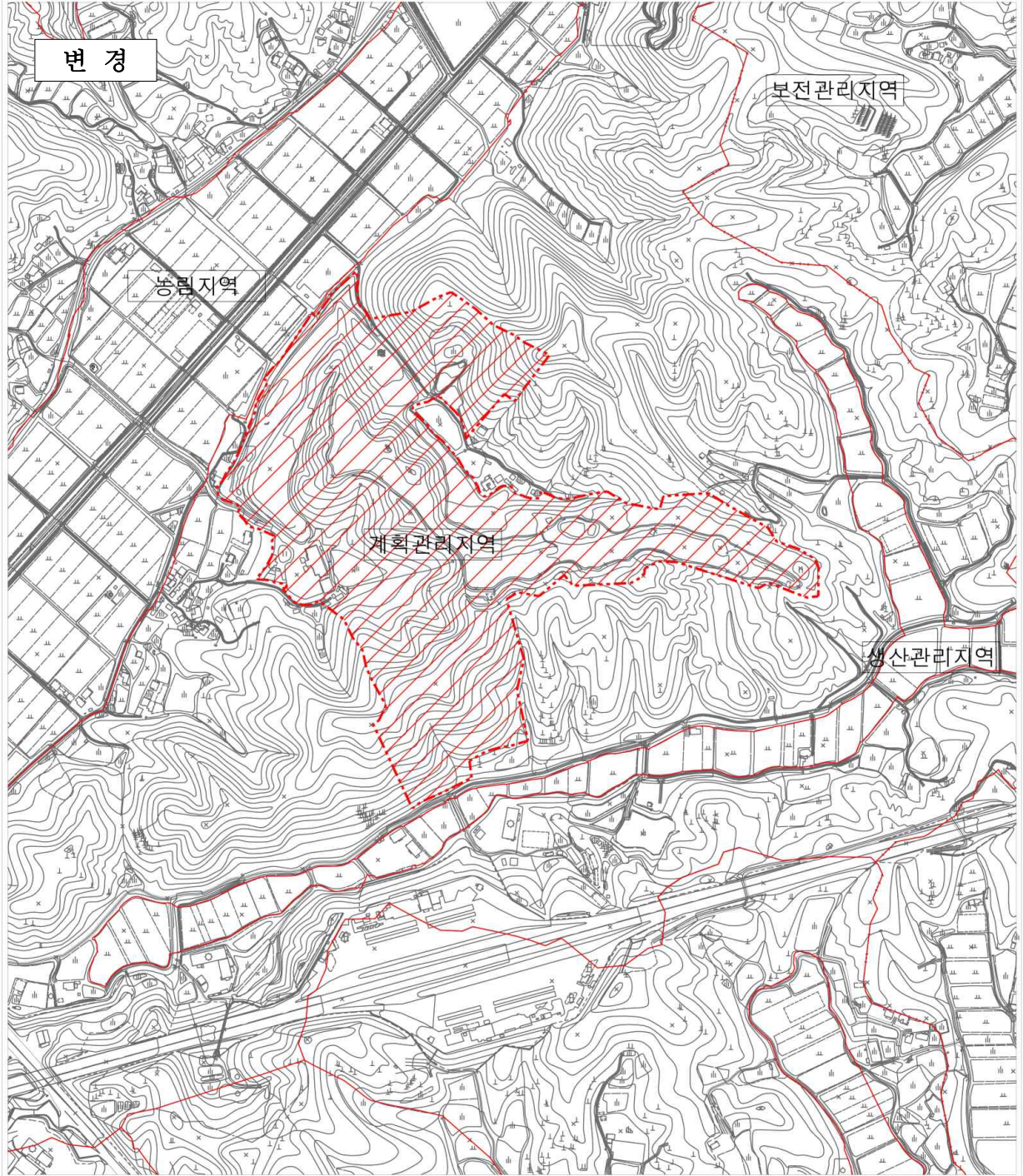


PROJECT TITLE 골드리버CC	CONSULTANTS	NOTE	DATE 2023.06 SCALE 1/3000	SHEET NO.	SHEET TITLE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	------	------------------------------------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Scale = 1/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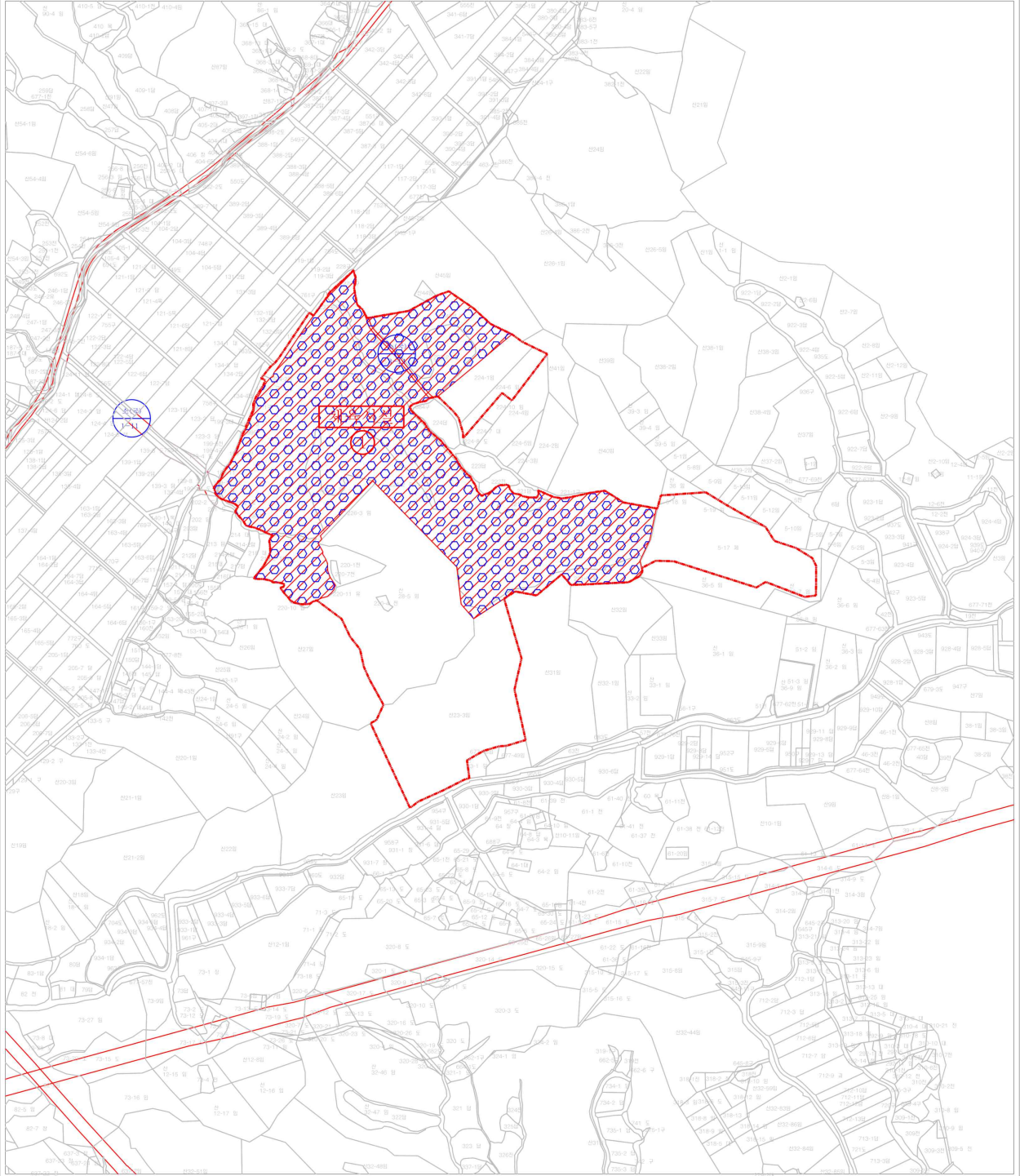


PROJECT TITLE: 글 드 리 버 C C	CONSULTANTS:	NOTE:	DATE: 2023.06	SHEET NO.:	SHEET TITLE: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SCALE: 1/3,000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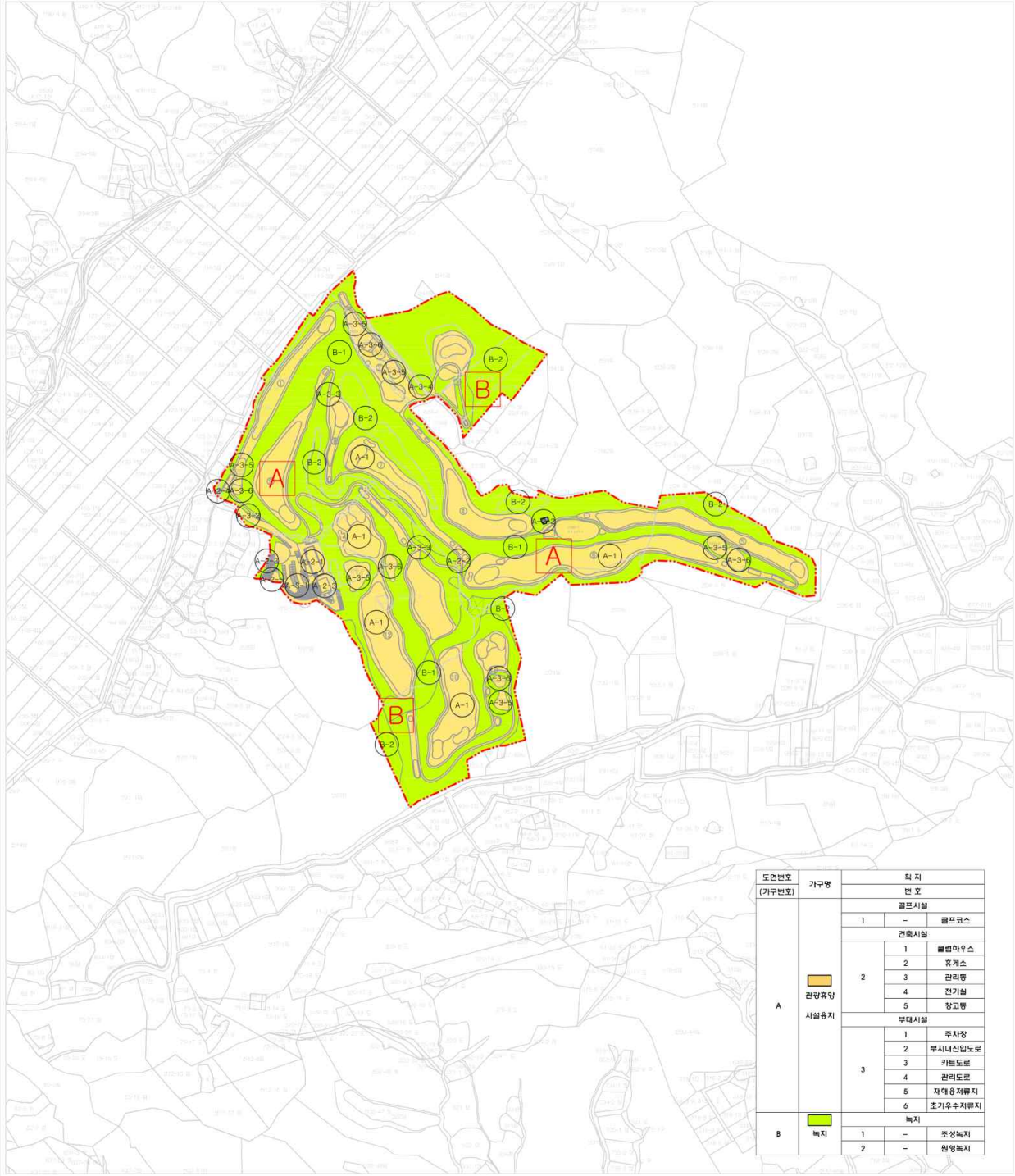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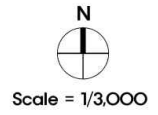


Scale = 1/3,000



PROJECT TITLE: 골 드 리 버 C C	CONSULTANTS:	NOTE:	DATE: 2022.11	SHEET NO.:	SHEET TITLE: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도
			SCALE 1/3,000		

가구 및 획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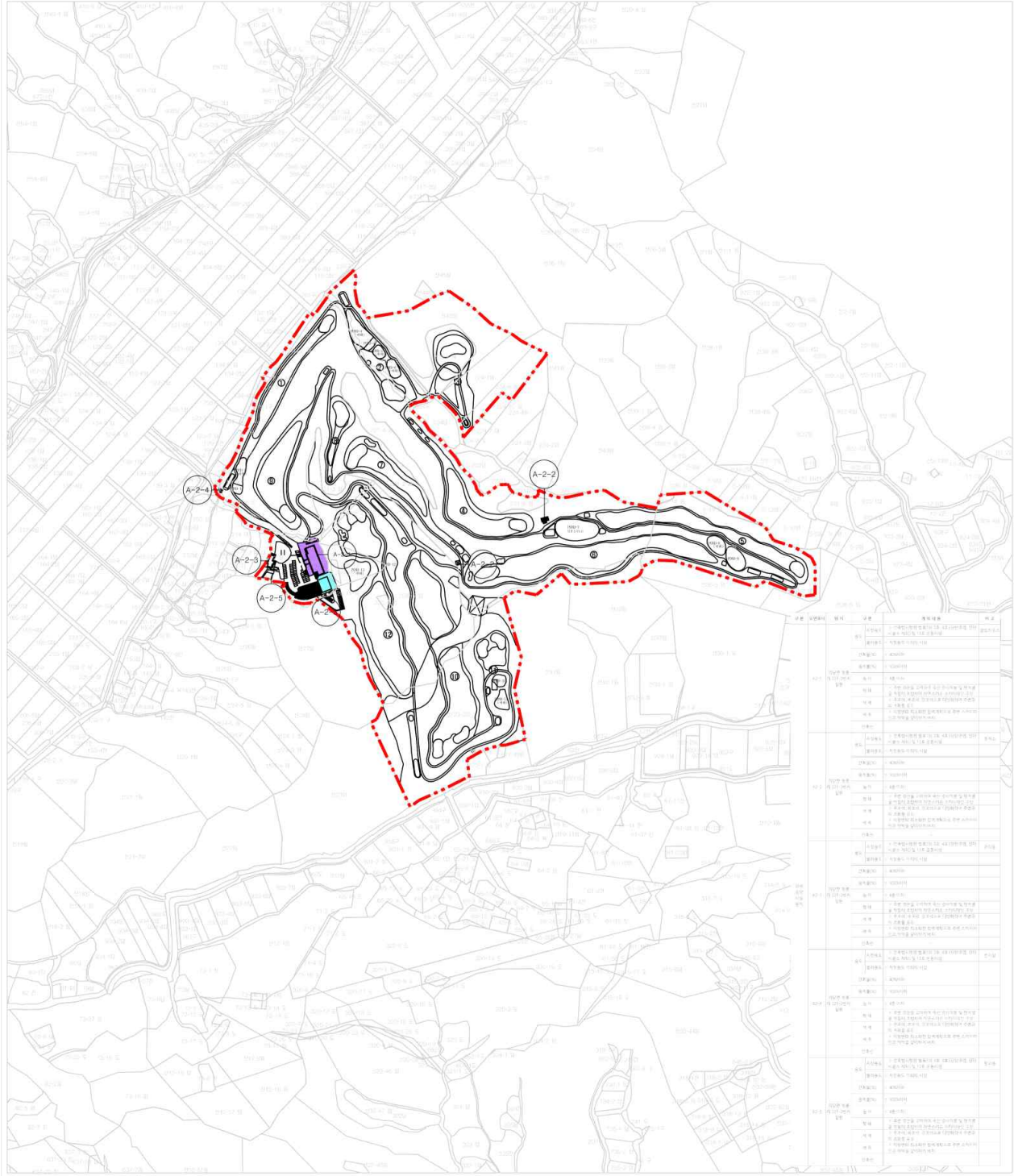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명	획지 번호	획지 내용
A	관광휴양 시설용지	1	골프코스
		건축시설	
		1	클럽하우스
		2	휴게소
		3	관리동
	4	전기실	
	5	창고동	
	부대시설		
	1	주차장	
	2	부지내진입도로	
B	녹지	1	조성녹지
		2	원형녹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결정(변경)도



Scale = 1/3,000



구분	내역	비고
1. 건축물 용적률 결정	구분	건축물 용적률 결정 (용도건폐율용적률)
	비고	건축물 용적률 결정 (용도건폐율용적률)
2. 건축물 용적률 변경	구분	건축물 용적률 변경 (용도건폐율용적률)
	비고	건축물 용적률 변경 (용도건폐율용적률)
3. 건축물 용적률 결정	구분	건축물 용적률 결정 (용도건폐율용적률)
	비고	건축물 용적률 결정 (용도건폐율용적률)
4. 건축물 용적률 변경	구분	건축물 용적률 변경 (용도건폐율용적률)
	비고	건축물 용적률 변경 (용도건폐율용적률)

골드 리버 C C	CONSULTANTS :	NOTE :	DATE : 2023.04	SHEET NO :	SHEET TITLE :
			SCALE : 1 / 3,000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결정(변경)도

유구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23-11번지 일원 『유구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침」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9일

공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유구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 낙후된 농촌지역에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개선,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농촌 건설 도모

3. 사 업 비 : 2,071백만원(국비 1,314, 도비 227, 시비 530)

4. 주요 사업내용

- 안전·위생 확보 : 보행안전길 정비, 재래식화장실 정비, 혐오시설 정비
- 노후주택정비 : 슬레이트지붕 개량, 노후 집수리, 빈집 철거
- 기초생활 인프라 : 주민운동공간 조성
- 경관시설정비 : 노후담장정비, 공원조성
- 휴먼케어·주민역량강화 : 어르신 행복얼굴담기, 마을축제 지원 등

5.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사업대행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6. 사업시행기간 : 2021년 ~ 2024년(4년간)

7.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재생기반팀(041-840-865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공주시 유구읍 일원 『유구 연중~동해지구 선형개선사업(시도13호선)』 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제9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 을 고시합니다.

2023. 8. 16.

공 주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 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 치	면 적 (㎡)	시 점	종 점	중 요 통과지	총연장 (km)
결정	시도	13호선	유구 연중 ~ 동해	공주시 유구읍 구계리 ~ 동해리 지내	82,694	공주시 유구읍 구계리 134-1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388-1	-	4.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유구 연중~동해지구 선형개선사업(시도13호선)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 2023. ~ 2025. 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동해1	8.0	국지 도로	7,100	유구읍 구계리 455-3	유구읍 동해리 388-1	일반 도로	-	-	시도 13 호선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소로 2-동해1	· 위치: 공주시 유구읍 일원 · 폭원: 8.0m · 연장: 7,100m	· 시도 13호선 기 개설구간 및 금회 신규 개설구간 도로 구역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신설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인가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충남 공주시 유구읍 구계리~동해리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동해1)사업
 - 나. 명칭 : 시도13호(연중~동해) 선형개선사업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L=4.5km, B=8.0, A=55,292㎡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 나. 성명 : 공주시장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사업의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나. 사업의 준공예정일: 2025년 12월 31일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계제 생략(열람장소 비치)
- 7) 관계도서: 계제 생략(열람장소 비치)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간
- 장 소 : 공주시 도로과 (☎ 041-840-8911)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상왕도로(시도23호선) 확·포장공사(2구간)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08. 16.

공 주 시 장

1. 도로구역의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km)
당 초	시 도	제23호	내흥~상왕	공주시	54,948	계룡면 내흥리 545-2	상왕동 산29-16	-	6.28
변 경	시 도	제23호	내흥~상왕	공주시	55,359	계룡면 내흥리 545-2	상왕동 산29-16	-	6.2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상왕도로(시도23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변경

3.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가. (기정) 2019년 ~ 2023년 6월 30일

나. (변경) 2019년 ~ 2023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열람장소 : 공주시 도로과 도로계획팀(☎041-840-8911)

다. 도로구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상왕1	8~47.4	집산 도로	1,614	상왕동 776-3	상왕동 산29-16	일반 도로	-	'22.01.17.	시도 23호선
변경	소로	2	상왕1	8~47.4	집산 도로	1,614	상왕동 776-3	상왕동 산29-16	일반 도로	-	'22.01.17.	시도 23호선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경 사유
소로2- 상왕1	소로2- 상왕1	○선형 변경 - 폭원, 연장 변경 없음	○상왕도로(시도23호선) 2구간 공사 진행에 따라 여름철 호우로 인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에 대한 포장 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도로 선형 변경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상왕동 776-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상왕1)사업

나) 명칭 : 상왕도로(시도23호선) 확·포장공사(2구간)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규모 : 폭원 8~47.4m, 연장 1,614m(시도 23호선) [변경구간에 한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

나)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사업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23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공주시 도로과 도로계획팀(041-840-8911)에 비치]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도로구역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행복도시~공주(3구간)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08. 16.

공 주 시 장

1. 사업명 : 행복도시~공주(3구간) 도로건설공사
2. 도로구역의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 연장 (km)
신설	국도	40	행복도시~공주 3구간	충남남도 공주시 신관동 금성동 일원	25,621.8㎡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25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206	제2금강교	0.82

3. 도로구역 결정 사유 : 행복도시~공주(3구간)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4.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가. 교통시설

-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2	30	주간선 도로	2,848	7호광장	쌍신동 지구계	일반 도로	신관 터미널	1985.12.28	
변경	대로	2	2	30	주간선 도로	2,848 (141)	7호광장	쌍신동 지구계	일반 도로	신관 터미널	-	
기정	대로	3	3	25~30	주간선 도로	2,283	2호광장	공흥동 지구계	일반 도로	금강교	1977.02.17	
변경	대로	3	3	25~30	주간선 도로	2,283 (593)	2호광장	공흥동 지구계	일반 도로	금강교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0	15 ~17.5	보조간선 도로	387	대로3-3	15호광장	일반 도로	금성동 금강변	1985.12.28	
변경	중로	2	20	15 ~17.5	보조간선 도로	377	대로3-3	15호광장	일반 도로	금성동 금강변	-	
기정	소로	2	98	8	국지도로	186	대로3-3	대로3-9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2	98	8	국지도로	186	대로3-3	중로3-9	일반 도로	-	-	

* ()는 금회 공사구간임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2	대로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2,848m(변경없음) 폭원=30m(변경없음) 면적=4,310㎡→ 4,708㎡ (증 398㎡) (금회 공사구간 141m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도시~공구(3구간)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대로 3-3	대로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2,283m(변경없음) 폭원=25~30m(변경없음) 면적=15,636㎡ → 21,790㎡ (증 6,154㎡) (금회 공사구간 593m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도시~공구(3구간)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중로2-20	중로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및 가각부 변경 L = 387m → 377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도시~공구(3구간)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대로3-3호선의 일부구간 폭원변경에 따른 연장 및 가각부 변경
소로2-98	소로2-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각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도시~공구(3구간)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대로3-3호선의 일부구간 폭원변경에 따른 가각부 변경 (종점 시설번호 변경 반영)

나. 공간시설

1)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	광장	교통 광장	신관동 495-6일원	7,319	증) 116	7,435	1985.12.28	

2)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	광장	· 면적=7,319㎡ → 7,435㎡ (증 116㎡)	· 『행복도시~공구(3구간)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3)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대2-2호선변	12,361	감) 98	12,263	1987.04.02.	
변경	5	녹지	완충녹지	대3-3, 중1-1호선변 및 준주거, 상업지역	5,990	감) 332	5,658	1997.04.19.	

4)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완충녹지	· 면적=12,361㎡ → 12,263㎡ (감 98㎡)	· 『행복도시~공구(3구간)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5	완충녹지	· 면적=5,990㎡ → 5,658㎡ (감 332㎡)	· 『행복도시~공구(3구간)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5. 실시계획인가 내용

※ 금번 사업구간에 한함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또는 규모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비고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 금성동 일원	행복도시~ 공구(3구간) 도로건설공사	· 면적: 25,621.8㎡ - (대로2-2) 5,483.0㎡ - (대로3-3) 11,256.0㎡ - (중로2-20) 2,034.0㎡ - (소로2-98) 52.0㎡ - (교통광장8호) 6,436.8㎡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5.12.31.	

6. 사업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5년 12월 31일

7. 도로관리청 및 사업시행자

가. 도로관리청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성명 : 공주시

나. 사업시행자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 성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9.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1)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2) 열람장소 : 충청남도 공주시 도로과(☎041-840-8911)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변경 및 폐지 건물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8. 16.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561-11 외 31건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29건)					
변경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3건)				
폐지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0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840-847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8.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 일자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 전환 계획
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율정리 165-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561-11	2023 0816	신규	2010 0112	신관동 전막을 기점으로 하여 의당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의당로로 부여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2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율정리 170-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561-49	2023 0816	신규	2010 0112	신관동 전막을 기점으로 하여 의당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의당로로 부여	
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운곡리 715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보물길 8-81	2023 0816	신규	2010 0112	보물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	
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18-8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천이로 473	2023 0816	신규	2009 0825	공주시 의당면과 연기군 전의면을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반영	
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7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큰취골길 36	2023 0816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97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덕곡골길 15	2023 0816	신규	2010 0112	신제당이 있는 골짜기와 접해 있다 하여 당골길로 부여 후 다른지역과 도로명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구역 명칭 활용	
7	충청남도 공주시 검상동 273-1	충청남도 공주시 검상안길 43-18 (검상동)	2023 0816	신규	2010 0112	검상동 마을 안에 위치한 길로 검상안길로 부여	
8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703-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돌고지길 38-20	2023 0816	신규	2010 0112	돌이 많고 향아리를 짓는 마을이라하여 생김 자연마을 명칭 활용	
9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 746-4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해평길 35	2023 0816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1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29-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명곡2길 36-8	2023 0816	신규	2010 0112	명곡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명곡2길로 부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 일자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전환계획
11	충청남도 공주시 소화동 321-22, 321-23, 321-24	충청남도 공주시 소화동길 63-30 (소화동)	2023 0816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1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월곡리 193-6, 193-7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국골길 22-10	2023 0816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1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죽곡리 254-7, 254-8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부내로 739-11	2023 0816	신규	20100 112	넷물이 구불구불 흐른다 하여 구부내라 불렀던 명칭을 활용	
1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상성리 275-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아랫대실길 8-21	2023 0816	신규	2010 0112	대나무가 많은 마을의 아래쪽에 위치한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15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월곡리 170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국골길 37-4	2023 0816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16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328-4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내문안길 88-6	2023 0816	신규	20100 112	내문리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내문안길로 부여	
17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71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여드네1길 145	2023 0816	신규	2010 0112	옛날 역마을 비치해 두던 역촌으로 가구가 80여 채라고 하여 여드네1길로 부여	
1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514-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외곽로 339	2023 0816	신규	2010 0112	행정구역 명칭과 도로특성 반영	
19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474-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외곽로 378	2023 0816	신규	2010 0112	행정구역 명칭과 도로특성 반영	
20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563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돌마사정길 23	2023 0816	신규	2010 0112	돌마루 사정리라는 자연마을을 지나는 길이라 돌마사정길로 부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중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 일자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 전환 계획
2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구암리 10-1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옷샘길 28	2023 0816	신규	2010 020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2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134-2, 134-5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들메기길 50	2023 0816	신규	2010 0112	목동리 하천옆을 지나는 길로 예전부터 들메기라 불렀던 지역명칭을 활용	
23	충청남도 공주시 신흥면 산정리 423-2	충청남도 공주시 신흥면 산정안말길 16	2023 0816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을 활용후 다른지역과 도로명 중복을 방지하기위해 행정구역 명칭 첨가	
24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378-14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단평길 94	2023 0816	신규	2010 0112	조선시대 초 이마을에 단평역이 있었다 하여 단평길로 부여	
2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계리 23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계연종길 168-34	2023 0816	신규	2010 0112	구계리와 연종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	
26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277-191	충청남도 공주시 가나무정길 77-95 (상왕동)	2023 0816	신규	2010 0112	가나무가 정자처럼 서 있는 마을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27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북룡리 711-1, 711-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고내울길 19	2023 0816	신규	2011 0506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2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93-7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무심길 134	2023 0816	신규	2010 0112	어떤 풍수지리가 이 마을 앞의 산에 묘지리를 정해 주었는데, 사실은 좋은 묘지리가 아니었고, 이것을 안 사람들이 그 풍수지리를 무심하다고 원망하였다하여 무심길로 부여	
29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대성리 272-10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대성길 67-14	2023 0816	신규	2010 0202	대성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대성길로 부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공적장부주소전환계획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일자	변경사유	
1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79-8, 79-9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79-8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신풍길 104-6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신풍길 104-6	2023.07.31	관련지번 정정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2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79-7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79-9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신풍길 104-15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신풍길 104-15	2023.08.07	관련지번 정정	
3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79-11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79-7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신풍길 104-11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신풍길 104-11	2023.08.07	관련지번 정정	